

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차량정비처장
(경유)

제목 선금지급 알림 [전동차 차륜삭정용 차륜전삭기 제작 설치]

1. 관련근거

- 가. 회계규정 제50조 선급금의 지급
- 나.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(2017.02.01.) 6장 선금·대가지급 요령
- 다. 재무처-3679호(2017.04.07.) 계약체결 알림
- 라. 회계결의서 126500-20170413-8 선금지급

2. 귀 처에서 의뢰하여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선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을
알려드리니 지급된 선금이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총당될 수 있고
관리감독하여 주시고 선금전액 사용 후 사용내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
라며, 선금반환사유 발생시 즉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계약건명: 전동차 차륜삭정용 차륜전삭기 제작 설치
- 나. 계약상대자: (주)에코마이스터 137-81-07056 (대표자: 오상윤)
- 다. 계약금액: 금1,424,000,000원(금일십사억이천사백만

원)

- 라. 선금지급액: 금213,600,000원(금이억일천삼백육십만원) (계약금액의 15
- 마. 선금지급일: 2017. 04. 14.(금)
- 바. 선금지급조건

- 1) 채권확보: 선금지급보증서
- 2) 선금반환: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, 선금의 목적외 사용, 사고이월
로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 발생시 즉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즉시 반환

붙임: 1. 청구서, 세금계산서, 보증서, 시국세, 선금금적정성평가서 각 1부
2. 행정자치부 예규 1부. 끝.

재무 

최정진

협조자

시행 재무처-4067 (2017.04.17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
전화 2223 전송 2210 / ismileiam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